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용 여권의 재고 소진과 예산 낭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여권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구 일반 전자여권 병행 발급

1) 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 명시(안 제2조의2)

2) 구 일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 명시(안 제6조의3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 등) ① 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은 가로 8.8센티미터, 세로 12.5센티미터로 한다.

② 구 일반 전자여권의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(國號)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,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(紋章)을 표시하며,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(標識)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.

③ 구 일반 전자여권의 표지 색상과 면수는 녹색 24면 또는 48면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 단서 중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: 5년. 다만,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 각 목을 삭제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구 일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) 외교부장관은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구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1.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. 다만,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가.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: 2년

나. 제6조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횟수가 2회인 사람: 2년

2.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: 통보된 기간

3.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: 5년 미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2조의2,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제6조의3은 동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일반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동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 등) ① 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은 가로 8.8센티미터, 세로 12.5센티미터로 한다.
<u><신 설></u>	② 구 일반 전자여권의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(國號)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,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(紋章)을 표시하며,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(標識)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.
<u><신 설></u>	③ 구 일반 전자여권의 표지 색상과 면수는 녹색 24면 또는 48면으로 한다.
제6조(일반여권의 유효기간) ① (생략)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	제6조(일반여권의 유효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

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.
다만,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
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
쳐 결정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
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
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
하다고 통보한 사람: 통보된 기
간

5. (생략)

6.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
만,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
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
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가.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
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
사람: 5년

나.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
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
상인 사람: 2년

다.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
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
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: 2년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여권 재발급 신청
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
수가 2회인 사람: 5년. 다만, 여
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
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
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7. (생략) ③ (생략) 제6조의2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7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2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3(구 일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) 외교부장관은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구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. 1.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가.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: 2년 나. 제6조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: 2년 2.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: 통보된 기간
--	--

<u><신 설></u> 대통령령 제00000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3.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: 5년 미만</u> 대통령령 제00000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유효기간) 제2조의2,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제6조의3은 동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.</u> <u>제3조(일반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동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여권과	
연 락 처	(02) 2002 - 0013